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28 발의연월일: 2024. 11. 28.

발 의 자: 김태년 · 정준호 · 홍기원

박지원 · 김준형 · 김병기

전현희 • 이훈기 • 한민수

김영진 · 김영배 · 손명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母)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민법」상 친생추정에 따라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출산한 경우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법률상 남편이 자기의 자녀로 신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모가 현재의 혼인상태의 안정을 위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원치 않는 경우 등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범죄나 유기, 학대 등의 대상이 되는 비율은 출생신고된 아동에 비해 매우높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된 사실임. 생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률상 부의 친생추정을 부인하여야 하는데,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권이 없음. 즉 생부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률상 방법이 없는 상황임. 최근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의료기관 이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여전히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신고의무자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생부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과학적 방법에 의해자녀와의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현행 「민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인지의 효과는 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및 생부의 가족구성권 등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4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생부에 의한 출생신고) ①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제46조의 신고의무자에 의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생부(生父)가 자녀의 출생신고 를 할 수 있다.

- 1. 혼인 외 출생자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제44조의4제2항 에 따른 최고기간
- 2. 혼인 외 출생자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제 4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 ② 생부는 제1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실시한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라 생부와 출생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생부가 제1항의 출생신고를 하는 때에는 생부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도 할 수 있다.
- ④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4조의5를 준용한다.

- ⑤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없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제46조의2제1항의 개

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제46조의2(생부에 의한 출생신고) ①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간 내에 제46조의 신 고의무자에 의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생부(生父) 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1. 혼인 외 출생자가 의료기관 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제44조 의4제2항에 따른 최고기간 2. 혼인 외 출생자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생한 경우 에는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② 생부는 제1항에 따라 출생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실시한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 적 방법에 따라 생부와 출생자
	적 방법에 따라 생부와 출생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증 명하는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야 한다.

- ③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생부 가 제1항의 출생신고를 하는 때에는 생부의 등록기준지, 주 소지 또는 현재지에서도 할 수 있다.
- ④ 시·읍·면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4조의5를 준용한다.
- ⑤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 력이 없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